

※ 이 문서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입국하는 분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상륙거부 조치 중,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입국 및 재입국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사례

2020년 8월 28일 현재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당분간 일정 국가·지역에 체류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해 상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특별 사정을 이유로 재입국허가 (유사재입국허가 포함. 이하 동일) 를 받아 출국한 외국인으로 일본국대사관 · 총영사관에서 교부한 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 또는 출입국체류관리청에서 교부한 수리서를 지참한 자, 혹은 ‘국제적 인적교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라 상륙허가 신청을 하는 외국인, 이외에 특히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 사정 등에 의해 입국이 허가되기도 합니다 (주 1).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주 2)
 - 일본인 ·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남아 있어 현재 이산가족 상태에 놓인 경우
 - ‘교육’ 혹은 ‘교수’ 의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으로, 소속 혹은 소속예정 교육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충이 없으면 해당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실시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의 필요가 있는 자
 - ‘의료’ 의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으로 의료체제의 충실 · 강화에 이바지하는 자

(주 1)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의 입국·재입국에 관련한 추가적인 방역조치>](#) 참조).

(주 2) 입국 목적 등에 따라 체류한 국가·지역의 일본국대사관 · 총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관리부심판과

전 화 : (대표) 03-3580-4111 (내선 4446 · 4447)